

## 2025년도 2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2025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수행기관 의무사항
  - 4-4.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11.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12.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기술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에너지산업의 기반조성

##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전략 로드맵 분야(14대 유망분야\*) 대상
  - 연구개발계획서 첫페이지 “기술분야” 에 14대 분야 중 해당 지원 분야 1개 작성 필수
- \*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CCUS, ESS, 섹터커플링, 산단건물, 연료전지, 전력계통, 자원순환, 청정연료발전, 정유, 태양광, 풍력

##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40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공모방식	프로그램명	지원예산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상연구 개발과제
기반조성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해외연계)	자유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40	8
합 계				40	8

-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지원 연구개발과제수이며, 접수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평가결과에 따라 총 지원사업비(연구비) 및 총 연구개발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1-4. 지원내용

- (프로그램 목적) 에너지신산업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우수인재를 해외 우수 기관에 파견하여 에너지기술분야 혁신 인재 육성
- 지원개요
  - (사업기간) '25.10.1 ~ '26.9.30 (12개월)
  - (지원형태) 자유공모를 통한 과제 단위 지원
  - \* 과제는 국내 대학의 단독(복수 학과 가능) 또는 복수 대학 참여 가능
  - (지원예산) '25년도 40억원 이내 (1개 과제당 5억원~10억원 내외)
  - \* 과제당 파견인원 최소 5명 이상, 8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파견 학생당 최대 1억원)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 지원
  - (주요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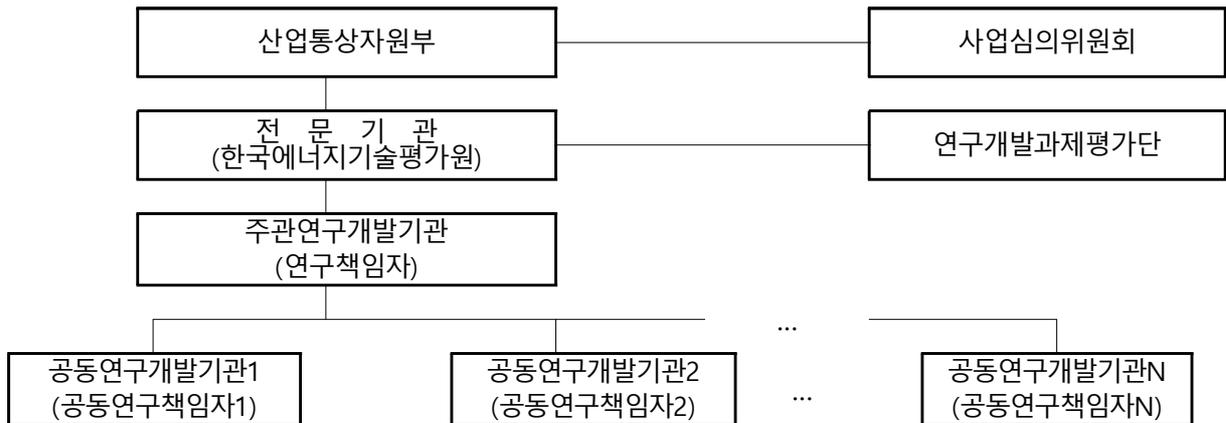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참여 석·박사 학위 과정생\*을 현지 파견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

\* 국내 대학 학위 과정생으로 한국 국적 소지자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3절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6. 글로벌 인재 양성 추진계획 (4) 위험 장애요인 해결방안 > “다. 계획수립(안) “ 에 특수 상황(비자 발급 지연, 코로나19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작성할 것
- \* 1)파견기관 변경(안), 2)출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출국과 준하는 조건의 교육수준, 연구경험 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안) 등 필수 작성
- (과제수행 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 특수 상황의 경우 미출국에 대한 사유서 및 원격연구 계획서를 추가제출하여 전담기관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시 미출국 원격 연구를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됨. 단, 해외기관과 협의된 원격연구에 대해서는 추진 내용, 연구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를 결과에 반영함.
- \* 미출국 원격연구 적용시 사업 진행사항 및 성과/결과는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 필요하며 해당결과에 따라 진도점검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2. 사업추진체계

o 일반형 과제



##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① 연구개발비 구성

-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하여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할 수 있음

##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이 가능함

##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

##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2 참조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자유공모

###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o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구분	프로그램	과제수	지원기간	총 지원예산	과제당 예산	주관연구개발기관
해외연계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8개 내외	'25.10~'26.9 (1년 지원)	40억원	5~10억원 내외 (과제당 파견 학생 최소 5명)	대학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으로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과제를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대학

해외협력기관

o 해외 대학, 연구소

파견대상

- o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소속의 학위 과정생으로 한국 국적 소지자
  - 과제 연구분야 및 전공·학과기준으로 지원 여부 판단, 학부생 및 박사 후 연구원 등 학위과정이 종료된 자는 지원 불가
  -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중인 재학생

4-3. 수행기관 의무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o 과제당 파견 연구자가 최소 5명으로 구성하여야 함
- o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수행기간 및 종료 이후 성과활용기간에 전문기관의 중간 점검 및 평가, 성과발표, 성과 추적조사 등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함
- o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과제는 예산활용 적정성 검토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o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인력(행정 전담인력) 1인 이내 배치를 권고하며, 해당 인력은 과제 관리 및 파견자 출국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함

- 과제 신청 시 해외협력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하고, 해외협력기관 연구책임자(학과장, 그룹장, 센터장 등 이에 준하는 직급자) 서명이 있는 참여의향서(제출서류13-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해외협력기관용)\_LOD)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과제형태에 따라 해외협력기관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편성·지급 가능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내로 편성 가능(주관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 지급)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하는 경우, 협약 체결 시 해외협력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공동연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연구 계약서는 ①공동연구 목표 및 내용, ②연구개발기간 및 사업비, ③장비 및 참여인력, ④과제 수행 방법, ⑤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의 내용을 필수로 명기한 자유양식
- 참고자료의 “[참고] 체재비 산정기준\*” 을 준용하여 체재비 산정을 권고
  -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특수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기준의 75%

#### □ 파견연구자

- 파견 기간 중 졸업 등으로 인해 재학생 신분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파견대상자(수혜자)로 선발될 수 없음
  - \* 박사 진학 예정자 가능(증빙 및 서약서 등 필요), 박사 후 과정(박사학위 취득자)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파견연구자에 대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및 파견 계획을 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파견연구자는 최소 해외 체류 기간(6개월 이상 연속)을 준수
- 파견기간 중 국내 체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건강악화 등)에 한해 최대 2주(출입국 사실증명서 증빙)이내 허용
  - \* 체류를 위한 항공료 등 일체 비용 연구비 집행 불가, 체류기간 일할 계산하여 체재비 반납
- 파견기간 중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100%를 원칙
- 연구수행 결과물로 연구노트 작성,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해외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하며(1인당 1건 의무), 제출기한 내에 논문 미발표 시 해당자에게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전액 이내)를 전담기관에 반납해야 함(평가위원회에서 반납 범위 결정)
  -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국내외 학술대회 구두 발표까지 인정(포스터 발표 및 초록 불인정)
- 파견인력은 파견종료 후 1개월 내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미복귀, 중도 포기, 신분의 변화(자퇴, 퇴학 등)시에는 해당자에게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해야 함

- 전문기관은 파견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파견상황(건강상태 등 포함)에 대해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해당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함

□ 해외협력기관

- 해외협력기관은 파견인력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공간을 활용·지원해야함
- 1명의 해외 지도인력이 동시에 지도하는 파견인력은 5명을 넘지 않도록 권장

4-4. 지원제의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처리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부도</li> <li>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li> </ol> <p>※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p>
---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 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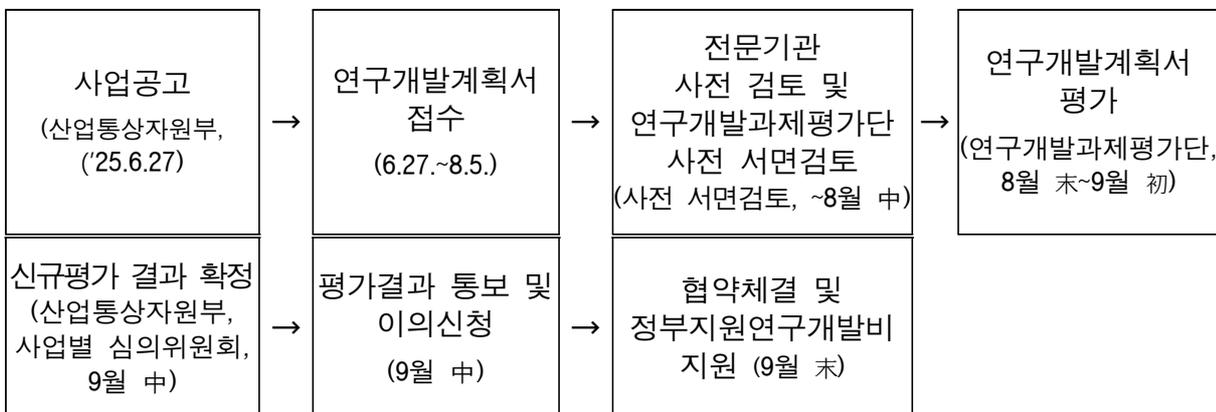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o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o 평가 전까지 파견인력 선발·운영 계획 인원이 최소 5명이 어려운 경우
- o 자유공모 프로그램 개요서의 주요사항(추진체계, 의무사항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5. 평가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결과 등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 평가항목

#### 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프로젝트 운영현황 및 계획 구체성
  - \* 과제 신청 시 관련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MOU, 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파견가능한 연구자(석박사 재학생 등) 확보 현황 및 선발계획 타당성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파견 연구자(최소 5명) 선발, 해외 협력기관 발굴, 공동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 전반을 관리·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노하우, 해외 참여기관 의지
- 성과목표 적절성 및 성과 활용계획 타당성 등

#### <평가표>

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지원 타당성 (15)	▶ 신청분야 연구주제는 글로벌 인력양성이 필요한가?	5
	▶ 신청분야 연구주제는 국내기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우선적으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분야인가?	10
연구수행 역량 (25)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이 우수한가? - 역량(예시) : 최근 3년간 혁신성장분야 연구실적, 기자재·장비 보유현황 등	10
	▶ 주관사업 연구책임자 역량은 우수한가? - 역량(예시) : 공동연구 또는 프로젝트 수행 실적, 글로벌 교육과정 개발·운영 실적 등	5
	▶ 해외 협력기관은 해당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역량(예시) : 관련분야 논문, 특허,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10
사업 계획 구체성 (45)	▶ 에너지신산업 분야 공동 연구내용 및 연구주제 설정이 국내외 기술 현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도출·설정되었는가?	15
	▶ 국내-해외 기관간 역할분담이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가?	10
	▶ 연수생 선발계획이 타당하며 구체적인가? -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인력 현황, 사전 수요조사 등	10

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사업의 사업관리, 홍보 계획은 적절한가? - 국내 컨소시엄 구성이 적절한가? - 위험장애요인(비자발급 지연, 코로나 등) 발생 시 극복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	5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비 사용계획은 적절한가?	5
국제협력 전략 (10)	▶해외기관의 본 사업 참여 의지 및 기여도가 우수한가? - 해외 협력기관 연구비(현물, 현금) 분담 계획 등(MOU, 계약서)	10
기대효과 (5)	▶양성된 인력의 산업계(연구) 취업 연계 및 전문성 기여수준?	5
합계		100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제재처분 받거나 수행 포기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적용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접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

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윤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 양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내 용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a href="http://www.iris.go.kr">www.iris.go.kr</a>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5.6.27.(금) ~ 8.5.(화) 까지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기간 : '25.6.27.(금) ~ 8.5.(화) 18:00 까지(접수 마감시간 엄수)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전산접수 시 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미동의 시 연구개발계획서 최종제출 불가
	○ 양식교부 및 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a href="http://www.iris.go.kr">www.iris.go.kr</a>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a href="http://www.ketep.re.kr">www.ketep.re.kr</a> ) 공지·공시(사업공고)

###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접수전 필수 이행 사항’ 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 IRIS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는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간까지 IRIS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완료하여야 함(확약서 제출 필수)
- ※ 반드시 신청마감일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3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참조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붙임5 참조

11.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붙임6 참조

12.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목적 : '25년도 2차 공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전산접수 방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지역	개최 장소	시간
'25.7.1(화)	서울	서울 SETEC 2층 세미나실2 (학여울역) (주소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10:30~11:30

- \* 상기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온라인 배포예정
- \*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주차비 미지원)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http://www.ketep.re.kr)) 공지·공시(사업공고)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 인력양성실 (02-3469-8452(공고), 8451/8456(평가))
-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1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요서

### □ 프로그램 목적

- 국내 석·박사 학생 대상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기술격차 해소 및 미래 유망분야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

### □ '25년 2차 신규지원분야

내역	프로그램 구분	공모방식	지원내용 및 기간
해외연계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자유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전략 로드맵 분야 (14대 유망 분야*)</li> <li>- 석박사급 고급인재 40명 내외에 대해 1억원 내외/1명 지원</li> <li>- 지원과제별 최소 5명으로 구성(파견자 기준)</li> </ul>

\*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CCUS, ESS, 섹터커플링, 산단건물, 연료전지, 전력계통, 자원순환, 청정연료발전, 정유, 태양광, 풍력

### □ 지원조건

- (사업기간) 2025. 10. 1. ~ 2026. 9. 30.(총 1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파견인력 최소 5명\* 기준, 5~10억원 내외(인당 1억원 이내)
  - (1인당) 인건비, 체재비, 연구활동비 등 12개월 기준 최대 1억원 이내
  - 과제규모는 40억원 범위에서 각 과제별 예산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수는 조정
- 참여 석·박사 학위 과정생\*은 해외 협력기관과 최소 6개월 이상 현지에서 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연구 활동에 대한 공동논문 게재 등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상세히 보고하여야 함
  - \* 국내 대학 학위 과정생으로 한국 국적 소지자

### □ 과제수행 주요 내용

- 에너지신산업 기술격차 해소방안 및 미래 유망분야의 선두 연구그룹이 있는 해외 우수기관과의 협력 계획 및 연수생에 대한 공동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국내-해외기관 간 역할 분담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역량 있는 연수생 선발 과정의 전문성, 체계성, 공정성을 확보한 프로세스 및 공동 연구 및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역량 확보
- 파견 연구자(연수생) 의무사항
  - 파견연구자는 최소 해외 체류 기간 (6개월 이상)을 준수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파견연구자는 해외 프로젝트 종료 후 반드시 귀국해야 함
    - \* 1개월 이내 귀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에 지원된 국비 환수
  - 연구수행 결과물로 연구노트 작성,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해외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하며(1인당 1건 의무), 제출기한 내에 논문 미 발표 시 해당자에게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전액 이내)를 전담기관에 반납해야 함 (평가위원회에서 반납 범위 결정)
    -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국내외 학술대회 구두 발표까지 인정(포스터 발표 및 초록 불인정)
  - 최종보고서에 현지 기술 동향 및 현황을 작성하여 공유(1장 이내)
  - 파견연구자는 해외 파견 기간에 동 사업참여율을 100%로 계상해야 함
  - 파견기간 중 국내 체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건강악화 등)에 한해 최대 2주(출입국 사실증명서 증빙)이내 허용
    - \* 체류를 위한 항공료 등 일체 비용 연구비 집행 불가, 체류기간 일할 계산하여 체재비 반납
    - \* 학생 파견연구자 해외 파견에 필요한 제반 자체 기준 마련 계획 포함 필수
    - \*\* 학생의 국내지도 교수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필수(학생 안전 등 관리 필요)

□ 성과지표 (안)

-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를 제시

구 분	성 과 지 표 (안)		가 중 치	전 체	1억 원 당	단 위
필수지표(안)	수혜인원 수		5%			명
	파견인원 수		15%			명
	배출인원 수		5%			명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수		20%			개
	국제공동논문	SCIE급	40%			건수
		비SCI(E)*급	5%			건수
		mrnlF	10%		-	

\* 1억원당 : 전체 성과지표 값/정부지원연구개발비(억원)

\*\* 국내외 학술대회 및 저널

## 붙임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인력양성사업 학생연구원 과제참여 기준

-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계상률은 최소 20%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 파견연구자는 해외 파견 기간에 동 사업 인건비 계상률을 100%로 계상
  -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내 체류학생들 또한 수혜학생으로 인정 가능 (단, 국내 체류학생 관련 연구개발비는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내로 제한)

###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비 사용

- 대학을 제외한 국내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및 사용할 수 없음
- 기업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기업이 사용 가능
- (행정전담인력) 과제 관리 및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전담 연구근접지원인력 배치 하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억원 기준 1인 이내(인건비 계상율 100% 이내)로 제한 권고(2인 이상 불가)
  - \* 인건비 계상률은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천만원(%) 이내로 계상(ex.5억원 과제인 경우 인건비 계상률 50% 이내 1인 가능)
- (지도교수 국외 여비) 해외협력기관 국외 출장으로 2회 이내 허용(총 2주 이내)
- (체재비) [참고]의 주요 국가 지역별로 산정기준을 참고(기준과 다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확정)

### □ 인력양성사업 연구수당 계상 기준

-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에서 산정하고, 개인별 연구수당 최고액은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인력양성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

- 간접비는 각 수행기관별로 수정직접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포함하고 현물제외, 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 산정

###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 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제4호에 따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2월 27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주 용역비 산정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붙임3 제출 서류 사항

#### □ 연구개발계획서

번호	서류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3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파일 업로드(HWP)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출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7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정보 확인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원료 협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출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8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10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협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2	감점사항 확인서	▪ 감점사항은 온라인 입력(시스템)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3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4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자료 제출)
14	해외 협력기관현황 (파견대상 기관 모두 작성)	▪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15	해외협력기관용 참여의사확인서 (LOI)	▪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제출서류4-2]는 제출 불필요
16	서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 및 연구책임자 날인 참여연구자용	▪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17	공동연구계약서	▪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하는 경우에는 협약 시까지 필수 제출, 그 외는 필요 시 제출(자유서식) ** ①공동연구 목표 및 내용, ②연구개발기간 및 사업비, ③ 장비 및 참여인력, ④과제 수행 방법, ⑤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의 내용을 필수로 명기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붙임4 기타 유의 사항

### □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해당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4호에 해당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 기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한 대학에서 2개 이상의 과제에 유사한 내용(사업계획서 내용, 참여연구원 등)으로 복수 지원한 경우,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면제될 수 있음
  -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기타 세부내용은 프로그램별 개요서를 반드시 참조(붙임1)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붙임5’의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 “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 선정기준 등은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참고
-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 기술 라이선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선싱 비용 (계약금, 착수로, 경상기술료 등 실지금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 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 과제 접수 상황 등에 따라 단일분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프로그램개요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7조의2항을 따름
  -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단,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대외 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

####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20% 이상)

#### □ 향후 동일 프로그램 지원 시, 성과 반영

- '25년 이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신산업글로벌 프로그램에 신규 지원 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해당 공고로 지원받아 달성해야하는 성과 결과(달성여부, 달성목록 등) 작성 필수

## 붙임5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정의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대상 여부

- 공고문 연구개발과제목록, 기술개요서 참조

###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유의사항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함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월칙)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지원 가능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중 위험물질 취급 유무는 기술개요서 참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총수행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 □ 제도개요

-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 관련근거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4.12.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9호))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과제유형에 따른 신청 자격

-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 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신청 가능
  - \* 총괄 연구개발과제, 비공개(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R&D자율성트랙(지정): 신규과제 공고시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초격차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 총괄 연구개발과제, 비공개(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 신청자 유형

-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중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研·민간생산研 등)
  -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중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연구책임자(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방법 : 협약 후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srome.keit.re.kr>)에서 신청
  - \* 주의사항 : 재무정보 입력시 ‘행추가’ 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관) 정보입력

□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기업 대상)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b>2개</b>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li> <li>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li> <li>3. 부분자본잠식</li> <li>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li> <li>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li> </ol>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amp;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li> <li>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영리/비영리 모든 기관)</li> </ol>

□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li> <li>○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사용</li> <li>○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li> <li>○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li> <li>○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li> </ul>

-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제9조 참조

□ 적용기간

- R&D자율성트랙 지정 통보 이후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까지 적용